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정 2009. 12. 1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6호  
개정 2010. 12. 1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38호  
개정 2013. 2. 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90호  
개정 2014. 1. 1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16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 ①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둔다.

③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전담부서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제5조(정보공개 원칙)**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 ①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불복 대응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각 부서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제 2 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법령 제·개정 사항, 주요업무계획 등)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입찰공고 등)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예산·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4.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④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당해기관이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본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

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 3 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2인, 민간위원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회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

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결서 및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마.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바.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결정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제15조(공개방법)** ①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 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산정하고,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③“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정보공개 운영현황 지도·점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점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소속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①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행위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62호(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준용한 것으로 본다. <삭제>

###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1.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2. 민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형사소송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4. 통계조사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5. 근무평정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6. 공무원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비밀엄수)
8. 감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9.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0. 국민제안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5조
11. 기타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근거법령)
1. 귀빈참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참석행사 의전계획</li> <li>○ 대통령 방문일정</li> <li>○ 해외 주요인사 참석행사 의전계획</li> <li>○ 해외 주요인사 방문일정</li> <li>○ 안보관련 회의 일정 및 참가자 정보</li> </ul>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을지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지훈련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li> <li>○ 을지연습 기본계획 및 사전계획</li> <li>○ 을지연습 사후보고, 사후처리</li> <li>○ 강평회 보고서 등</li> </ul>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3. 민방위 및 예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훈련 실시계획</li> <li>○ 민방위경보시설 운영</li> <li>○ 민방위대 편성</li> <li>○ 직장예비군 편성</li> </ul>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4. 보안 및 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li> <li>○ 비밀기록물 생산현황</li> <li>○ 암호자재</li> </ul>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5. 충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무계획(충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li> <li>○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li> <li>○ 동원시설, 자원조사</li> <li>○ 충무훈련 실시결과</li> </ul>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6. 정보통신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li> <li>○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li> <li>○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li> <li>○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li> </ul>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위기관리, 재난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li> <li>○ 재난대응훈련 매뉴얼</li> <li>○ 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li> <li>○ 재난대책 등</li> </ul>	공개될 경우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전시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예산편성표</li> </ul>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예산안 편성지침</li> <li>○ 전시인력동원계획</li> <li>○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li> </ul>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9. 외교,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li> </ul>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신체·생명·재산권 보호
2.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공개함으로써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보호
3.방재·방범업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4.주요시설관리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5.위험물관리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심판·소송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조서 등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협성이 있는 정보	공정한 심리보장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
2.수사관련정보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및 공정한 심리보장
3.범죄의예방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청사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청사 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 유출로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단속 및 지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li> <li>- 불시감사계획(사안 종료 후 공개), 불시감사업무개선안</li> </ul>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2. 검사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li> <li>○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li> <li>○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li> <li>○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 지시서</li> </ul>	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3. 심사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li> <li>○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li> <li>○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li> <li>○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li> <li>※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li> </ul>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4. 공무원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li> <li>○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li> </ul>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 초래

5. 인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li> <li>○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li> <li>○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li> <li>○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 위원회의 심사내용</li> </ul>	인사업무의 공정성 저해
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 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사안 종료 후 공개)</li> <li>-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li> <li>-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사안 종료 후 공개)</li> <li>- 연구용역 중간보고(사안 종료 후 공개)</li> <li>-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비공개)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외</li> <li>- 위원회 의결서(사안 종료 후 공개)</li> <li>○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li> </ul>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li> <li>○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 조서 등</li> <li>○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li> </ul>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8. 각종 위원회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li> <li>○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li> </ul>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p>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li> </ul>	
9. 공무원 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p>□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9조제1항제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li> <li>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li> <li>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li> <li>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li> <li>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li> </ul>
--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개인식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단,</li> <li>※<b>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b></li> <li>※<b>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b></li> </ul>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2. 개인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li> </ul>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민원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li> <li>○진정, 민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li> <li>○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와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li> <li>-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li> </ul> </li> </ul>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4. 인사관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정정 사항</li> <li>○임용, 채용, 시험관련 업무에 따른</li> </ul>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신상정보 ○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5. 재산, 임금관련	○ 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복무관련	○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 선택적복직,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 출장(초과) 명령부, 근무상황부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 비위사실조회결과, 징계내역(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8. 기타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 행정처분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각종 영업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법인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b>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b>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2. 보조금지원 단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b>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b>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2. 개발관련	○대규모 문화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

1. 정보공개 신청인

2. 심의 안건

3. 공개여부 심의결과

구 분	성 명	可 (인용)	不 (기각)	서 명
위원장				
위 원				

심의 결과 위와 같이 (인용·부분인용·기각·각하) 하기로 결정함.

2013. .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 ○ ○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견서

심의내용

검토의견

참고사항

2013. . .

심의위원 : (인 또는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 정보공개심의 회의록

안 건				
일 시		장 소	※ 대면회의일 경우 기재	
심의위원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명단
	명	명	명	
회 의 내 용				